

의안번호	제 2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9월 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※ 국민권익위원회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검토 반영

2. 주요내용

- 민관협의회 위원회 연임 제한을 없애고,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이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고,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며, 공공·기업·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·협업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사회민관협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20. 2. 26.>

제2조(청렴사회민관협회의 설치)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회의(이하 "민관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2. 26.>

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공공·기업·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,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·기업·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·평가에 관한 사항
4.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·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5.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대국민 청렴 교육·홍보·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운영)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

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 2. 26.>

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(互選)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.

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
2.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
 - 나.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
 - 다. 언론계·학계를 대표하는 사람
 - 라.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

④ 민관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훈령)을 검토 반영하여 「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○ 작성자

충청북도 감사관 박 대 순